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 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,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등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군인사법(법률 제18680호, 2022.1.4. 공포, 2022.7.5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위임사항인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, 순직자·공상자 분류기준 중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23 제1항제4호를 제5호로, 제5호를 제6호로,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반사망자 : 별표 11에 해당하는 사망자

[별표 8] 순직자 분류기준표(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) 중 다음을 개정한다.

2-1-3	<u>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,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(Helicopter Rappel: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~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)·패스트로프(Fast Rope: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) 훈련 중 사망한 사람</u>
2-3-9	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<u>상이 또는 질병</u> 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

[별표 10] 공상자 분류기준표(제60조의23제1항제6호 관련) 중 다음을 신설한다.

2-1-3	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,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(Helicopter Rappel: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~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)·패스트로프(Fast Rope: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)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
-------	---

[별표 11] 일반사망 분류기준표(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)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직무를 이탈하여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본인 또는 타인의 고의·중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.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의 무단이탈 행위 나. 출장, 전보, 파견 등의 경로를 이탈한 행위 다. 기타 위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이탈 행위
2.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 또는 사적 원인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고의·중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
3. 본인의 비위사실로 인한 다음 각 목에 경우. 단, 본인의 비위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형사수사 또는 징계조사 진행 중 자의로 사망한 경우 나.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자의로 사망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사망 분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
일 기준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23(전사자등의 구분)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· 순직자 · 일반사망자 · 전상자 ·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(이하 "전 사자등"이라 한다)의 구분에 관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5. (생 략) 6. (생 략)	제60조의23(전사자등의 구분)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· 순직자 · 일반사망자 · 전상자 ·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(이하 "전 사자등"이라 한다)의 구분에 관 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법 제54조의2제2항단서에 따른 <u>일반사망자 : 별표 11에 해당하 는 사망자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	
연 락 처	(02) 748 - 3092